

## 5. 建築法施行令改正

大統領令 第12906號 1990.1.18公布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고속도로·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지형적으로 가시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경우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나목·법 제5조·법 제6조제3항 및 제8항·법 제7조·법 제7조의2·법 제7

조의3·법 제9조의2제3항·법 제42조제1항내지제3항·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 2 제 1 항 중 “ 3 년마다 30 일 이내에 이를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를 “ 3 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 관람집회시설 · 위탁시설 · 관광숙박시설용인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로 한다.

제 13 조제 1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 대상구역의 면적은 5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도시기능 및 지역여건등을 5 만제곱미터 미 만으로 할 수 있다.

제 13 조제 3 항제 4 호 내지 제 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 5 . 건축물의 위치 · 규모 · 용도 및 형태에 관한 규제계획
- 6 .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7 .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 8 . 기준건축물의 처리와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 9 . 제 3 호 내지 제 8 호의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제 13 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 군수는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때에는 10

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의 2 (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기준 완화 ) 법 제 8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3 분의 2 를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 2 .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충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 배로 한다.
- 3 .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 ·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1.2 배로 한다.

제 15 조제 1 항 본문중 “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 군의 조례 ( 이하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라 한다 ) ” 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로 하고, 동항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퍼센트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립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 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 1 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 2 .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 3 . 시장·군수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 4 .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 15 조제 3 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

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파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균란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 16 조제 1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 2 호중 “구조기술사”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3 조 본문을 제 2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가능

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제 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센티미터이상인 것.

제 26 조제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 27 조제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 29 조제 1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 29 조제 2항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 35 조의 2 중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 개구부”를 “거실”로 한다.

제 37 조제 1항 표의 구분란중 “환자용 복도·공동주택의 공용복도”를 “환자용 복도”로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갖

복도식의 경우에는 1.2 미터이상,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0미터마다 측벽폭의 2 분의 1 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

제 46 조제 1항중 “연면적이 1 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1 만제곱미터 또는 16 층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 49 조제 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면적이 1 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건축설비 기술사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53 조제 2항중 “공연장 또는 관람장”을 “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로 한다.

제 55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폭 20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남

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6 조의 2 제 1호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 61 조의 2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에 자체 부자유자용 승강기·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안내를 위한 유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2 조 표의 도로의 폭란 중 “읍”을 “읍·면”으로 한다.

제 63 조 제 1항 단서 중 “읍”을 “읍·면”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에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4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과 도로폐지허가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71 조 제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4 조 제 1항 중 “구역을 정하고”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로 하고, 동조 제 2항을 삭제한다.

제 85 조 제 2항 및 제 3항을 제 3항 및 제 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 86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의 용적율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 87 조 제 3항 중 “하천”을 “하천·공공용지·시설녹지”로 한다.

제 88 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본다”를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 89 조 제 1항 중 “도로(막다른 도로 및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를 제외한다)에 접

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6 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를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 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 )으로부터 각각 6 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로 한다.

제 90조제 1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  
쪽 대지를 포함한다 )의 경우에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2조 ( 대지안의 공지 )** ①건축물을 건  
축하는 경우에 법 제 41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부속건축물  
( 다음 표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인 경  
우를 제외한다 )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  
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  
을 수직 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단위 : 미터 )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당 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 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대지가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 어야 하는 건축선 부 분 등
1. 공해 공장(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에서 건 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 )	6이상		모든 건축선
2. 연면적 300제 곱미터이상인 창 고(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	6이상		모든 건축선
3. 판매시설 · 숙박 시설 · 관람집회시		4이상	도로에 3면이상 접 한 경우에는 당해 도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등
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 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 상인 것.			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4.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	6이상		혹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②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위 : 미터 )

구 분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2.0이상	1.0이상	0.5이상

구 분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안의 건축물			
관립집회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3.0 이상	2.0 이상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구부가 있는 곳	-	2.0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	1.0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4.0 이상	3.0 이상

구 분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것	1.0 이상	0.5 이상
		3층또는 4세대이상인 것	2.0 이상	1.0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개구부가 있는 곳	1.0 이상	0.5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3.0 이상( 2층이하인 경우 2.0 이상 )	2.0 이상( 2층이하인 경우 1.5 이상 )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6이상 또는 높이의 0.5 배중 작은 것 이상	5이상 또는 높이의 0.5 배중 작은 것 이상
		아파트		

제 9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3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군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97 조제 1 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시

장 또는 군의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를 “시장·군수”로 하고,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를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 97 조제 2 항중 “15인”을 “25인”으로 한다.

제 97 조제 7 항중 “제 1 항 내지 제 6 항”을 “제 1 항 내지 제 7 항”으로 하여 이를 제 8 항으로 하고, 동조제 6 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 구의 경우에는 구청장 )”로 하여 이를 제 7 항으로 하며,

동조제 5 항중 “시장등은 제 4 항 각호”를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는 제 5 항 각호”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의 경우 구청장) 등으로 하여 이를 제 6 항으로 한다.

제 97 조제 4 항을 제 5 항으로 하되, 동항제 1 호중 “제정”을 “제정·개정”으로 하고, 동항제 2 호중 “도시설계”를 “도시설계안의 심의”로 하며, 동항제 6 호중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 8 호중 “구조안전”을 “구조계획”으로 하며, 동항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 15 조제 2 항, 제 56 조의 2 제 1 항, 제 71 조제 1 항, 제 84 조제 1 항, 제 102 조제 1 항제 1 호 나목 및 제 2 호·제 3 항제 2 호·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제 97 조제 3 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률·조경·색채”로 하여 이를 제 4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 99 조제 1 항에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용도 변경

제 100 조중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를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을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법 제 41 조제 4 항”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 33 조의 규정의 준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 41 조제 4 항의 규정의 준용은 제 3 호의 공작물에 한한다.

제 100 조에 제 8 호 및 제 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높이 6 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 조사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제 100 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 32 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1 조제 1 항제 3호 다목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1조제 1 항제 4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제 101 조제 1 항제 5호 나목의 단서중 “지표면으로 본다”를 “지표면으로 보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에 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하층의 지 표면산정 : 법 제 2 조제

1 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제 10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가 법 제 53조의 7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22 조의 3·법 제 30조·법 제 39조 및 법 제 39조의 2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22 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다.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2. 대지가 법 제 30조제 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에 한한다)을 후퇴함으로써 법 제 39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다.

-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지역
  -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제 102조제 2항제 2호단서중 “시장·군수”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로 한다.

제 102조제 3항 본문중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을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 101조제 1항제 1호 단서”를 “제 101조제 1항제 1호단서”로 하고, 동항제 2호단서중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 102조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⑦시장·군수는 기존건축물(1988년 8월 24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을 말한다)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이나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에 대하여는 제 16조제 1호의 지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립주택, 다세대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별표 2] 제 4항 본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하고, 동항 제 1호 및 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 3호를 삭제한다.

1.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학원.

2.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2천 500 제곱미터이하로서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

나. 폭 3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별표 2]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 21항 및 제 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외의 것으로서 폭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인구 20만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 닥면적 합계 33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⑨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3] 제 7항중 “자동차계 강습소”를 “자동차계 학원”으로 하고, 동표에 제 12항 및 제 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⑪오피스텔(인구 30만이상 시급도시

에서 폭 2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4] 제 8호중 “자동차계 강습소”를 “자동차계 학원”으로 하고, 동표에 제 14항 및 제 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식물관련시설

⑮발전소

[별표 5]에 제 9항 내지 제 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노유자시설(유치원에 한한다)

⑰식물관련시설

⑱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6]에 제 11항 내지 제 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노유자시설(유치원에 한한다)

⑳식물관련시설

㉑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7]에 제 11항 및 제 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㉒발전소

㉓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별표 10]에 제 9항 및 제 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㉕제 1호 내지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광업에 부수되는 농막, 양어장,

관리용 건축물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시장·군수가 녹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⑩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

[별표 11] 제 1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 19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자동차계 학원

⑫식물관련시설

[별표 12] 제 8 항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광업계 강습소”를 “광업계 학원”으로 하고, 동표제 15 항 및 제 18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 27 항 및 제 28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

⑭자동차관련시설(차고·자동차매매장·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다)

⑮식물관련시설

⑯발전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표] 제 4 항제 2 호 및 제 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 8호중 “기원·당구장”을 “당구장”으로 하며, 동항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5. 정구장·탁구장·헬스클럽·체육도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 제 9 항제 4 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자동차계강습소”를 “자동차계학원”으로 한다.

[부표] 제 11 항제 2 호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표] 제 13 항제 3 호중 “5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표] 제 14 항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표] 제 18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부표] 제 21 항제 1 호 및 제 7 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시내버스 및 택시등의 차고를 포함한다 )

#### 7. 자동차계 학원

[부표] 제 24 항 내지 제 28 항을 제 26 항 내지 제 30 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 24 항 및 제 2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식물 관련시설

1. 버섯재 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식물과 관련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식물원을 제외한다)

#### ③ 발전소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조제 2 항제 3 호 · 제 13 조의 2 · 제 88 조제 1 항 · 제 89 조제 1 항 · 제 90 조제 1 호단서 · 제 92 조 · 제 99 조제 1 항제 8 호 · 제 101 조 및 제 102 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 27 조제 7 호 · 제 29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2 항제 4 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선 후퇴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 102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분할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 다른 법령의 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협약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41 조제 6 항제 9 호를 삭제한다.

#### [별표 13]

####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제 25조 관련)

구 분	1. 한국공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 3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품 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li><li>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li><li>3. 보통합판</li><li>4. 수도용 아연도강판</li><li>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li><li>6. 옥내용 소형스위치류</li><li>7. 배선용 꽂음 접속기</li><li>8. 도아콜로우저</li><li>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li><li>10. 수도꼭지</li><li>11. 청동밸브</li><li>12. 복층유리</li><li>13. 보주정침</li><li>14. 배관용 탄소강판</li><li>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li></ol>

구 분	1 . 한국공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 3 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품 목	38 . 아연말 프라이머 39 . 투명락카 40 . 우드실라 41 . 광명단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42 . 알키드수지 바니쉬 43 . 스파 바니쉬 44 .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45 .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46 . 형광램프 ( 일반조명용 ) 47 . 소켓 48 . 배수용경질 염화비닐이음관 49 . 강화유리 50 . 일반배관용 강제 맷대기 용 접식 관이음쇠 51 . 특수배관용 강제 맷대기 용 접식 관이음쇠 52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3 . 스위치 박스 54 . 암면 단열재 제품 55 . 유리면 보온재 56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57 . 누전차단기 58 . 배선용차단기 59 . 구명 탄용 온수보일러 60 . 나사식강관제 관이음쇠 61 . 이음매 없는 동 및 합금관 62 . 주택용 분전반 63 . 프러쉬 플레이트
품 목	16 . 난방용 주철 방열기 17 . 난방용 강판 방열기 18 .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9 . 경질비닐 전선관 20 . 강제전선관 21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22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씨 말뚝 23 . 도자기질 티일 24 .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25 . 600 볼트 비닐절연전선 26 . 보일러 및 열교환기 용 탄소 강강관 27 . 후로링 보오드 28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29 . 경질염화 비닐꼴관 30 . 비닐 석면타일 31 .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32 .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 외부용 ) 33 . 광명단 조합페인트 34 . 조합페인트 35 .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6 .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 내부용 ) 37 . 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구 분	1. 한국공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3 층이 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품 목	<p>64. 노오말 밴드( 경질비닐 전선 관용 )</p> <p>65. 박스( 경질비닐 전선 관용 )</p> <p>66. 카바나이프 스위치박스</p> <p>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p> <p>68. 보울밸브</p> <p>69. 수도용 제수밸브</p> <p>70. 주철밸브</p> <p>71. 플랜지 형 글로브밸브</p> <p>72. 플랜지 형 바깥나사 케이트 밸브</p> <p>73. 파이프 행거</p> <p>7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p> <p>75. 일반구조용 탄소강관</p> <p>76. 일반구조용 각형강관</p> <p>77. 타르에폭시 수지도료</p> <p>78. 벨로우즈 형 신축 관이음</p> <p>79. 플러팅밸브</p> <p>80.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p> <p>81.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p> <p>82.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p> <p>83.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p> <p>84. 하이탱크용 사이폰</p> <p>85. 로우탱크용 볼탭</p> <p>86. 로우탱크용 사이폰</p> <p>87. 시멘트 벽돌( 6 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p>88. 동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p> <p>89. 강관삽입 용접플랜지</p> <p>90. 플로어힌지</p> <p>91.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p> <p>92. 접합유리</p> <p>93. 아우트레트 박스</p> <p>94. 일반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프레식 관이음쇠</p> <p>95. 폴리에틸렌 관이음쇠</p> <p>96. 동 및 동합금 플레이어 관이 음쇠</p> <p>97.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p>
구 분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재료	
품 목		<p>1. 보통 벽돌</p> <p>2. 시멘트 벽돌</p> <p>3. 시멘트 블록</p> <p>4. 시멘트 기와</p> <p>5. 가압시멘트관 기와</p>